2011. 9. 6.

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안 건 명	비 고
1291	(1) 충주시 라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1298	(2) 충주시 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	
1299	(3) 충주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	
1300	(4)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1301	(5)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1302	(6)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
총 무 위 원 회

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조 례 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(1) 충주시 라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011.07.07	2011.07.12	2011.09.05	2011.09.05	총 무 과 장
(2)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	2011.08.26	2011.08.26	2011.09.05	2011.09.05	종 합 민 원 실 장
(3)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	2011.08.26	2011.08.26	2011.09.05	2011.09.05	종 합 민 원 실 장
(4)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011.08.26	2011.08.26	2011.09.05	2011.09.05	사 회 복 지 과 장
(5)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011.08.26	2011.08.26	2011.09.05	2011.09.05	사 회 복 지 과 장
(6)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011.08.26	2011.08.26	2011.09.05	2011.09.05	사 회 복 지 과 장

2. 제안설명요지

(1) 충주시 리·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○ 여건의 변화로 인구 및 세대수가 증감된 지역과 마을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한 비효율적 리·통·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

2) 주요내용

○ 인구 증가지역 및 주민불편 지역 통반 증설

- 봉방 10통 분통 ⇒ 10통, 23통 / 1개통 2개반 증
- 봉방 19통 반 조정 ⇒ 1개반 증
- 연수 1~9통 분통 ⇒ 85통 신설 / 1개통 6개반 증

○ 인구 감소지역 합통 및 공부(조례) 정비

- 수안보 온천1리, 사시리, 대사리 합반 ⇒ 4개반 감
- 금가면 신대2, 3리 반 조정 ⇒ 2개반 감
- 호암 4, 9통 반 조정 ⇒ 4개반 감
- 연수 59~61통 통반 조정 ⇒ 10개반 감
- 목행 4통, 용탄1,2통 반 조정 ⇒ 4개반 감

(2)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1) 제안이유

○ 「**국토이용관리법**」이 「**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**」 제정에 따라 폐지되었고 「국토이용관리법」에 규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위반 과태료 조항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이행강제금 조항으로 신설되어 이행강제금 부과·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동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) 주요내용

○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함

(3)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1) 제안이유

○ 「**부동산 중개업법**」이 「**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**」로 전부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동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) 주요내용

○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함

(4)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주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

2) 주요내용

○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(안 제2조 제3항 신설)
○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
(5)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주시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

2) 주요내용

○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(안 제29조의2 신설)
○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
(6)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

2) 주요내용

○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(안 제22조의2 신설)
○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1) 충주시 리·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인구 및 세대수가 증감된 지역과 마을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리·통·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
○ 인구와 세대수가 증가한 봉방동 10통은 분통하여 10통과 23통으로 하여 23통을 신설하여 1개통 2개반을 증설하고

○ 향후 건물 신축이 예상되는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연수동 1통, 5통, 7통, 9통, 26통은 통간 경계를 조정하면서 85통을 신설하여 1개통 6개반을 증설하며

○ 세대수가 증가하고 반별 세대가 동떨어져 있는 봉방동 19통은 반의 경계를 재조정하여 1개반을 증설하였음.

○ 삼성아파트 지역과 KBS 송신탑 주변 단독주택 지역인 연수동 59통, 60통, 61통은 통간 경계를 재조정하여 10개반이 감소하였고

○ 수안보면 온천 1리, 사시리, 대사리는 거주인구 및 세대수가 감소하여 반을 통합하여 4개반이 감소하고

○ 목행 4통, 용탄 1통, 2통은 주민 미거주 지역에 대하여반을 폐지하여 4개반이 감소하였음.

○ 그 외의 사항으로 지번변경 등으로 조례상의 지번과 현재 실제지번이 상이한 지역은 현실에 맞게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.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통·반 운영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통·반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12

(2)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○ 본 폐지 조례안은

「국토이용관리법」이 폐지되고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로 제정되어 「국토이용관리법」 제33조의2 제2항6호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현 조례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
○ 검토결과 현 조례의 근거법인「국토이용관리법」이 폐지되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로 제정되면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124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3에는 이행강제금으로 신설하여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(3)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○ 본 폐지 조례안은

「부동산중개업법」이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」로 전면 개정되어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「부동산중개업법」제39조제3항에 의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한 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
○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」제51조에는 위반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는

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절차와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현 조례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.

○ 검토결과

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를 규정한 현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례로 폐지함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(4)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본 조례안은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」 제3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또한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○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0년으로 규정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
기금성과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기금을 폐지하는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(5)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본 개정 조례안도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
○ 검토내용은 앞서 설명 드린 「충주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」과 같음.

(6)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본 개정 조례안도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
○ 검토내용은 앞서 설명 드린 「충주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」과 같음.

4. 질의·답변 요지

(1) 충주시 리·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▶질의 : 지금 연수동 59통, 60통, 61통을 그대로 놔두고 단독주택에 대해 통을 다시 신설하는 것인가?

○답변 : 그것은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며 저희는 삼성아파트가 480세대이므로 2개통으로 해도 통장 업무 수행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아파트는 2개통으로 하고 단독주택을 1개통으로 하려는 것임.

(2)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▶질의 : 없음.

(3)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▶질의 : 없음.

(4)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▶질의 : 장애인복지기금은 조정이 안 되는 것인가?

○답변 : 아직 장애인은 추진 중에 있음.

(5)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▶질의 : 없음.

(6)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▶질의 : 없음.

5. 심사결과

(1) 충주시 리·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
(2)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: 원안가결

(3)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: 원안가결

(4)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
(5)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
(6)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